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442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4424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2814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최종민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정

변론 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281494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가. 피고와 C 사이의 2020. 2. 10.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2020. 2. 10. 30,000,000원 현금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과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원지급청구를 하는 부분을1) 선택적으로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31. 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7.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36322(본소), 2020가소336233(반소)}, 그 후 위 판결은 2021.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은 E,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8242호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14. 일부 승소하고, 그 가집행 판결에 기해 위 E, D이 공동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20. 2. 10. 위 E, D과 사이에 위 경매신청 및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합의금을 총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아들인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고(C과 E, D 사이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20. 2. 10. 경 위 E,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상태였고 2021. 5. 10. 파산선고를 받았으나(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3364), 서울회생법원은 2023. 5. 24.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C은 2022. 6.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1), 그 판결은 2023.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C)은 2017. 9. 7. 피해자 A(원고)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든 민, 형사 및 모욕, 비방, 적대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 피해자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고(2017. 12. 29. 혐의없음 처분), 이에 피해자가 위 약정 위반을 근거로 2019.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이 2020. 1.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자녀인 B(피고)의 명의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D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2019. 11. 14. 일부 승소한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8242호) 위 판결에 기해 E, D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G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상황에서, 2020. 2. 10. E, D과 사이에 위 경매신청 및 위 민사소송 항소심 취하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총 1억 8000만 원으로 하고, 그중 1억 3000만 원은 위 건물 H호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영수인을 B으로 기재하고, 이어 같은 날 위 H호실에 대해 임차인 B,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단 전세원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E,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9, 10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있는데, C이 무자력 상태인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였으니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2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C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 명의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추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된 채권 상당액인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때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459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2021. 5. 10.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23. 5. 24.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나 C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하자는 소급하여

치유되었다(민사소송법 제60조).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파산관재인인의 부인권으로 흡수되고 파산관재인인의 부인권은 C에 대한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5. 10.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그 효과는 이 사건 소 제기당시로 소급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20. 11.경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즈음 C의 사해행위를 알았을 것인데, 그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경 C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서 고소내용으로 "C이 피고에게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사실이나 당시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가 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C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원고가 당시 C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이나 변동 상황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C은 원고의 위 고소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23. 3. 28.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 이미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가 2019. 12. 31.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대로 확정되어 성립된 것으로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C이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교부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것에 대한 보전차원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금전이 피고의 생활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다툼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한 원인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C은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즈음 현금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C이 이 사건 합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당시 C에게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계속 독촉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C의 자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7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전 증여에 따른 피고의 이득액은 30,000,000원이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는 공동담보 부족액인 20,000,000원에 한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2020. 2. 10.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은경

판사장재운

판사김우정

1) 원고는 2023.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주위적 청구로 금원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금원지급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